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7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박상혁 · 김현정 · 최기상

김병기 · 김한규 · 노종면

이기헌 • 조승래 • 강준현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회수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조세, 준조세, 민사채권 등 금전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인 만큼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서도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

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에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6(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① 공사는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관련자 중에서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의 경우 그 인적사항·채무액 등(이하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이 경우 채무액은 모든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를 말하며,이자 및 비용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채무의 내용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명단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대상 부실관련자(이하 "공개대상자"라한다) 선정, 소명내용 심의 등 명단공개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⑤ 공사는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부실관련자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게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통지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16조까지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⑥ 제5항의 소명기간이 경과한 후 공개대상자의 소명내용 및 채무액의 변제실적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후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
- ⑦ 제6항의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제1항의 해외재산 보유정황에 대한 기준, 공개대상선정 절차, 공개 기간 등 세부사항 및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명단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
 대상 부실관련자(이하 "공개대
 상자"라 한다) 선정, 소명내용
- 심의 등 명단공개에 관련된 주
- 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⑤ 공사는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부실 관련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게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기간은 3개월 이내로하며, 통지 방법 등과 관련된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16조까지의 송달에 관한사항을 준용한다.
- ⑥ 제5항의 소명기간이 경과한 후 공개대상자의 소명내용 및 채무액의 변제실적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후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
- ⑦ 제6항의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제1항의 해외재산 보유정황에 대한 기준, 공개대상선정절차, 공개 기간 등 세부사항및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